

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 
공공기관 위탁·대행 동의안  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경제산업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22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
- 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산업국장 최영숙

나. 제안이유

○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물가, 고금리, 고유가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임.

○ 위 사업은 해외수출마케팅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

보유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.

- ‘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’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대하여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, 「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대상 사업 :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
- 세부내용

| 구분  | 사업명                | 수탁·대행<br>공공기관명   | 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| 예산액(24년도)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동의안 | 경북 우수상품<br>유럽시장 진출 | (재)경상북도<br>경제진흥원 | 2024.5. ~ 12.<br>(8개월) | 400,000천원 |    |

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본 동의안은 「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7조<sup>1)</sup>에 의거 도지사의 사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<sup>2)</sup>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‘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’ 사업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1) 제7조(의회 동의) ①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2)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## 나. 대상사업 검토

- 유럽 내 한류 확산에 따른 K-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출 증대를 위해 경북 우수상품을 전시·홍보·판매함으로써 수출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임.
- 특히, 유럽시장의 경우 올해 10월말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(World-OKTA)가 주최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도내 기업체들이 참가하여 현지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음.
- 세계한인무역협회(W-OKTA)는 1981년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설립되어 활동하는 경제단체로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 회원 7천명, 차세대 회원 21,000명 등 총 28,000명의 한인 기업인으로 구성된 한인 최대 경제인 단체임. 이에 동 협회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럽 등 전 세계시장으로 새로운 거래처와 바이어 발굴을 통한 시장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.
- 상기 기술한대로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사업은 세계한인 경제인대회 기업전시회와 경상북도 유럽관측행사로 진행되며, 전시회 참가부스 임차 및 장치비, 통역비, 현지 차량임차비, 행사 운영비, 기업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2024. 5. ~ 2024. 12.까지 8개월 간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,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총 4억원(도비)임.
-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며 다양한 기업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무역사절단, 전시박람회, 맞춤형 기업지원 등 수출마케팅

지원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의거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,
- ‘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’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인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 위탁·대행의 법적 근거,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,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, 고유가, 고금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유럽지역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지역내 새로운 거래처 확보 및 신시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임.
- 또한,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불고 있는 한류를 적극 활용하여 식품, 화장품 및 생활소비재를 비롯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시장개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북통상(주)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 등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어관리 등 사후성과 거양에 보다 철저한 감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, 소관부서에서는 위탁기관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

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 
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